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공유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61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태호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공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 설>	제9조의2(고등교육 공유·협력의 기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공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협력 기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교육에 있어서 공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교육부에서도 이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¹⁾),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²) 등 국가, 지자체, 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 협력과 연관된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RISE 체계를 법제화하여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과 같은 공유대학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위한 공유, 협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상호 협력에 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에 이미 규정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학협력법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의 상호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교육기관은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직업과 관련된 특수학교까지 포괄하고 있음. 산학협력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RISE : Regi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2) COSS :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 산학협력법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 9. <생략>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략>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산학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법체계의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산학협력법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부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대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공유·협력 기반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내용에 동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